

법원 판결 들여다보기

정명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법률사무소 이채)

1. 2024년 7월 18일에 대하여



2024년 7월 18일, 많은 이들에게 중요하게 남을 판결과 결정이 하나씩 이뤄졌습니다. 바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과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뤄진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8.자 2023카합1009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합니다)입니다.

이 사건 판결과 결정은 같은 날 이뤄지기도 했지만²⁾ 그 외에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두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는 ‘가족’의 범위 및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변화하였음을 전제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³⁾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간 법원 안팎에서 이뤄진 사회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도, 헌법상 평등권의 실현을 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및 결단이 필요함을 사법부가 천명함으로써 이후 입

1)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청취하며 법률사무소 이채의 계정으로 무지개 깃발을 댓글로 달고 있던 모습을 이채 구성원의 지인분이 캡처하여 송부해준 이미지
 2) 일부 SNS에서는 이 사건 판결과 결정이 이루어진 2024. 7. 18.을 ‘퀴어(성소수자) 국경일’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간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권리가 박탈되어 온 성소수자들이 이 사건 판결과 결정을 본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인정받는 계기로 인지했음을 드러내줍니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행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단초라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 결정의 법리 및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개요, 쟁점, 판단

가. 사안의 개요

A씨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본인이 동성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원고가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피고측의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A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였다'고 설명한 뒤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후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원심(2심)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쟁점⁴⁾

이 사건 처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성 부부)과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다. 판결의 요지

1) 관련 법리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

4) 이 사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전통지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존부 역시 쟁점이 되었으나, 본 포럼의 주제에 맞지 않아 해당 쟁점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습니다.

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됨.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차별대우가 확인되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등 취지 참조)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인 피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피고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의 의의, 취지와 연혁

대법원은 건강보험제도를 국가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참조),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등 참조).

나) 피부양자인 배우자에 관한 행정해석과 그 인정범위의 확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1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제5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쟁점 규정'이라 합니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제2호),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제3호), 형제·자매(제4호)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제2호 [별표 1의2]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1]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계부모,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닌 친생부모·자녀, 배우자의 계부모에게도 부양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상의 규정을 살핀 뒤, 대법원은 피부양자제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과 '부양을 받을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은 물론이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역시 명시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 시행 당시부터 '자격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 또한 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의 법 해석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결과 '사실혼 배우자' 역시 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인 '배우자' 개념에 포섭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⁵⁾

○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 넘어 동거·부양·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음

○ 피고가 직장가입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임. 더욱이 피고가 마련한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알림으로써 그 관계를 공표하고 보증인 2명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성 동반자도 이러한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라)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함

대법원은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아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⁶⁾

○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함

○ 동성 동반자에 대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문제와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확정하

5)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대법원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보도자료 인용

6)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같은 글 인용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도 볼 수 없고,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공익도 상정하기 어려움

3)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⁷⁾

3. 이 사건 결정의 개요, 쟁점, 판단

가. 사안의 개요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진행된 축복식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합니다) 이동환 목사는 2019. 8. 31.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대한성공회 소속 김돈희 신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와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 축복식’(이하 ‘이 사건 축복식’이라 합니다)을 진행하였습니다.

2)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이뤄진 정직 2년 처분

그런데 이동환 목사의 이 사건 축복식 집례 직후 감리회 소속 목회자들(인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청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이 이동환 목사가 속한 감리회 경기연회(이하 ‘경기연회’라 합니다) 자격 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고발인 부적격으로 위 고발을 기각하였으나, 이후 자체적인 심사와 이동환 목사에 대한 대면심사 등을 거쳐 직접 이동환 목사를 고발하였고, 2020. 6. 17. 이동

7) 한편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하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4인,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약,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권영준). 별개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노태약의 보충의견,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이 있음

환 목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위 심사위원회의 기소 이유는 이동환 목사의 이 사건 축복식 집례가 감리회 교리와 장정 1403단(범과의 종류) 제3조 제8항(이하 '이 사건 장정규정'이라 합니다)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 일반재판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이 사건 장정 규정의 경우 2012년까지는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 등을 하였을 때'를 범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 10. 30. 지금과 같은 문구로 개정이 되었고, 이동환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로 기소되고 재판받은 첫 당사자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 10. 15.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의 벌칙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의 정직입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 이유는 “① 피고인(이동환 목사)이 감리회귀어함께 소속으로 이 사건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되는 행위이고, ② 피고인은 동성애자를 지지, 찬성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과정에서 그 불리함을 숨기고자 했으며, ③ 피고인이 담임하는 영광제일교회가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의 하나인 점도 피고인이 동성애를 찬성·동조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동환 목사는 상소하였으나, 총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 2년의 처분(이하 '정직 처분'이라 합니다)을 확정하였습니다.

3) 정직 기간 도과 이후 이뤄진 출교 처분

그런데 위 정직기간 도과 이후 2023. 3. 6. 일부 목사와 장로들이 이동환 목사를 고발하였습니다. 고발 이유는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로 정직 2년의 권징결의를 받았음에도, 정직기간이 도과한 이후 계속하여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를 하였고, 계교로써 경기연회 소속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으며, 채무자 소속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2023. 6. 7. 이동환 목사를 재차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이유는 이동환 목사의 행위가 교리와 장정 1403단(범과의 종류) 제3조 제2항(교회 모함 및 악선전), 제4항(교회의 기능과 질서 문란), 제8항(동성애 찬성·동조)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소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하였기에⁸⁾,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다시금 이동환 목사에게 대해 같은 사건으로 재기소를 하였고, 이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결국 2023. 12. 8. 이동환 목사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과사실을 근거로 하여 출교를 선고(이하 '이 사건 권징결의'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출교처분 범과사실]

1. 이동환 목사는 2021. 3. 12.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이에요.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죠.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권력 집단은 적을 상정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요.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어요.”라고 발언하고, 2021. 7. 22.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교로써 경기연회 소속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2. 이동환 목사는 2020. 12. 18.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하여 집례하였고, 2021. 6. 27.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하였고, 2021. 10. 6. 한신대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하여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하였으며, 2022. 7. 16.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이동환 목사가 대표로 있는 '큐엔

8)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심사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심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이(Q&A)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하여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함

위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이동환 목사는 상소하였으나, 총회 재판위원회는 2024. 3. 4.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이하 '출교 처분'이라 합니다)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위는 물론 감리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4) 정직 및 출교처분에 대한 사회재판 진행

이에 기존에 교회재판 단계부터 이동환 목사를 대리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한희, 최정규 변호사 등의 제안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내 '이동환 목사 사회재판 대리인단'⁹⁾이 꾸려졌고, 현재 아래와 같은 사회재판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출교 처분 -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안양지방법원)

- 2023. 10. 10. 신청서 제출
- 신청취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소 등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판절차와 2023. 9. 25.자 직임정지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 2024. 7. 18. 일부 인용 결정
- 현재 상대방의 이의신청 진행 중

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출교 처분 - 연회재판 판결 무효확인(수원고등법원)

- (1심) 2024. 12. 14. 소장 제출
- (1심) 청구취지 : 피고 소속 연회 재판위원회가 2023.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교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1심) 2024. 6. 27. 전부 승소 판결
- (1심) 2024. 7. 8. 피고 항소장 제출
- 현재 2심 진행 중

다) 총회 재판위원회 정직 처분 - 총회재판 판결 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2. 3. 소장 제출

9) 구성원(가나다순) : 강솔지, 김민아, 김은진, 박다혜, 박한희, 서채완, 신하나, 신유정, 윤영환, 임한결, 정명화, 조윤희, 조은호, 주선민, 최세안, 최석균, 최정규, 허자인 변호사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 청구취지 : 피고 소속 총회 재판위원회가 2022. 10. 20. 원고에게 선고한 동성애 찬성, 동조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3. 8. ~ 2024. 5. 변론기일(5회) 진행
- 2024. 8. 21. 판결 선고 예정

라) 총회 재판위원회 출교 처분 - 총회재판 판결 무효확인(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3. 26. 소장 제출
- 청구취지 : 피고 소속 총회 재판위원회가 2023. 4. 원고에게 선고한 출교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현재 소송 진행 중

아래에서는 위 사회재판 사건 중 '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출교 처분 - 재판 절차정지신청 가처분' 사건에서 이뤄진 출교 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사건의 쟁점¹⁰⁾

- 1) 이 사건 권징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등을 원인으로 이뤄진 이 사건 권징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결정의 요지

1) 관련 법리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10) 이 사건 결정에서는 이 사건 출교 처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1409] 제9조 제2항 상 규정된 교발한정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의 존부 및 이 사건 범과사실 중 '채무자 소속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범과의 인정 여부 역시 쟁점이 되었으나, 본 포럼의 주제에 맞지 않아 해당 쟁점에 대한 기술은 생략하였습니다.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판결 참조).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 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권징결의의 사법심사의 대상성

안양지원은 이 사건 권징결의로 박탈된 목사직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종교의 교리 및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권징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아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 채무자 소속 교회 내부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사법권의 한계 밖에 있다고 보거나 소의 이익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법상 지위의 존부나 그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결 및 처분의 효력 유무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전제문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에서조차도 소를 각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위험이 큰 점
- 현실적으로 종교단체 내에서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 그와 관련하여 효력이 다투어지는 각종 처분이나 회의체의 소집 및 결의 절차 등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가 적지 아니할 터인데, 그저 종교단체 내부의 신도자격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안에 관한 심리조처 거부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 종교단체 내에서의 신도자격이 그 종교단체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신도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결의의 이유 자체가 언제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 '출교(黜教, excommunication)'라 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벌이고,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최고의 형벌로서, '공동체에서의 추방' 곧 파문(破門)을 의미하는바, 특히 교회 내부의 분쟁에 관한 사법적 관여의 자제는 종교 단체의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고려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데, 채무자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전래된 것으로서, 감리교(Methodist Church) 자체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신도 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출교처분이 비단 국내 감리교를 넘어서 전 세계 감리교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를 경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채무자 내부에서의 자율적 문제 해결이라고 보기에 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 채권자가 이 사건 채무자 권징재판위원회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1심¹¹⁾에서 해당 재판부가 그 적법성을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나) 이 사건 권징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은 이 사건 권징결의에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본안소송에서 다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과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출교처분까지 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가처분단계에서 이 사건 권징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중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과로 출교처분을 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 제 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

1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출교 처분 - 연회재판 판결 무효확인(수원고등법원)

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 참여 및 축도의 구체적 동기와 경위, 당시 채권자의 발언 내용 및 참석자들의 반응, 채권자의 평소 소수자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채권자의 가치관 및 채권자의 과거 교단 기여 정도,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 및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함이 상당함

○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이 사건 목사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교인으로서의 지위까지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지위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헌법상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더욱 신중하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함이 상당함

○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 사건 범과사실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제5조 7)에서 규정된 징계의 종류 중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채권자의 일반범과 행위에 대하여 최고 징계인 출교처분을 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3) 결론 및 현황

안양지원은 이동환 목사와 경기연회 사이의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권징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안양지원은 이동환 목사의 신청취지 중 '직임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는 이상, 권징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권징결의는 확정되지 않아 집행력이 배제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출교처분 또한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별도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직임정지처분'의 효력정지까지 구하는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까지는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의 의의와 한계

가. 키워드 : '시대의 변화'와 '헌법상 평등원칙'

[이 사건 판결] 제5, 15면

3) 피부양자제도의 변천 과정

피부양자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지출 항목과 범위의 변화, 국가 경제의 성장,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족 구성의 변화, 가족 간 부양제도의 변천 등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바뀌어 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과 '부양을 받을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피부양자제도의 구체적인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다.

3) 피고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건강보험제도와 피부양자제도의 의의, 취지와 연혁 등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어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판결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의 적법성을 판단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피부양자 범위의 변화를 주요하게 살폈습니다. 즉, ○ 피부양자제도는 애초에 전통적인 부계가족 규범에 의해 적용대상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다가, 성차별적 내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고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최선순위의 사람에게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피

-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과 '이동환 목사 출교판결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의 의의와 전망

부양자 자격이 있으면 인원수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중 '배우자'의 인정범위와 요건 역시 완화하여 왔으며 ○ 건강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이혼 또는 사별한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이혼 후'이거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은 피부양자제도에서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장가입자와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 제11면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과도,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⁶⁾,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차별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 참여 및 축도의 구체적 동기와

이 사건 결정 역시,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음을 지적하며, ○ 동성애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단을 받아들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 동성인 군인들이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향문성교를 비롯한 성행위를 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정 역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상 평등의 원칙 및 평등권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포함된 점도 역시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의의와 한계

1)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이 동성부부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에서 동성부부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동성 간 혼인이나 '파트너십'(법적인 승인을 받은 결합관계)을 인정하는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성부부는 여러 권리의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동성부부는 현재 민법상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배제되고, 사회보장 및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며, 주거권에서의 차별과 가족결합권의 침해를 받고, 사회적 낙인과 소수자로서의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솔한 권리 침해 중 건강보험이라는 한 영역에 대해서이긴 하나, 동성부부 집단과 이성 사실혼 배우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동성부부 역시 그 관계에 기초한 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 판결은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성 간 사실혼의 성립 부인

다만 이 사건 판결은 애정에 기반한 동성부부, 동성결합 관계를 그 자체로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고부부는 서로를 부부로 받아들이는 데 의사가 합치하고, 결혼식도 치루었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저왔습니다. 법원 역시 원고부부가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현행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이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 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 점 ○ 대다수 가족법 학자들이 '이성'요건을 혼인관계의 근본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점 ○ 절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¹²⁾ 이 점에 대해서는 2심 법원 및 대법원 역시 견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동성혼에 찬성하는 비율이 40%를 차지했습니다. 2002년에는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했음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게 이뤄진 변화입니다.¹³⁾ 뿐만 아니라 현재 다수의 법학자 등은 동성혼을 비롯하여 혼인의 실질을 갖춘 새로운 결합관계에 대하여 법적인 혼인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¹⁴⁾ 이러한 상황에 비춰보았을 때, 이 사건 판결 중 동성부부를 사실혼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종교단체 내에서 이뤄진 성소수자 차별적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

이 사건 결정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 그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기존의 법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출교 처분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기독교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성직자나 교인들에게 징계라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표현의 자유 등의 탄압에 대하여도, 향후 같은 논리로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결정이기에 그 의미가 큼니다.

12) 장서연, 2023.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인권연구6(1): 226-237.

13) 한국 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44호 (2023년 5월 4주)

14)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2015, 34~42쪽; 이재희, 혼인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75~81쪽; 조홍석, 현행 헌법상 동성혼인,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2023, 172쪽; 한상희, 헌법상 혼인제도와 동성혼, 입법학연구 제20집 2호, 2023, 296~311쪽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은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에 근거하여 이뤄진 종교단체 내 징계 등의 위법성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회는 여러 사건들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감리회의 종교 교리의 해석의 문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차별적 처분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서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즉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 등에 대한 종교단체의 징계처분도 여타 기관의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통해 법과 인권의 언어로 그 효력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결정은 교회 내에서 이뤄진 성소수자 차별적 징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여 위법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 이어 이 사건 결정에서도 헌법 제11조 제1항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근거 조항으로서 적시함으로써, 성소수자 당사자 뿐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역시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법리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 사건 본안 사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

다만 이 사건 결정은 이동환 목사와 경기연회 사이의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만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으로서,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¹⁵⁾입니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의 지위가 종국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본안 사건인 경기연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5. 이제 어디에서 누구와 싸울까?

가. 법정에서의 승리는 광장에서의 승리로 이어질까?

보건복지부는 2024. 6. 27.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던 한 여성의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들었던 해당 여성의 혐의는 '살인죄'였습니다. 5년 전 '낙태죄'에 대하여

15)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진 뒤 현재까지 수많은 민원과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은 커녕 여성들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조치 시도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였기에, 유튜브 영상을 두고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는 그 속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충격과 분노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¹⁶⁾.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계기는 단 하나의 판결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판결 전후로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사람들을 추동하고 자원을 운용하는 제도의 변화가 서로 길항하며 만들어지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광장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나. 우리 중 누가 (피)부양자가 될까, 혹은 우리는 무엇에 찬성·동조하게 될까?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감지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동성부부'가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 혹은 생계공동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현재 사회보장법을 비롯한 한국의 법제도는 통상 민법상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가족을 사회의 최소 단위로 두고 그를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민법상 가족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개인이나 관계는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의 바깥에 배치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¹⁷⁾ 우리의 곁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조카를 키우며 사는 사람, 한 집에는 살지 않으나 윗집 아랫집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논리로, 성애적인 관계가 없이 이뤄진 다양한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까요? 반드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여러 관계들 역시 평등한 사회보장을 받고 서로를 위한 돌봄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더욱 듣고 말해야 할까요?

끝.

1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플랫폼C,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홀리스행동, 2024. 7. 17. "[공동성명/논평]임신중지에 '살인죄'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복지부는 수사 의뢰 철회하고 명확한 보건의로 가이드와 포괄적 상담, 지원 연계 체계 구축하라." 참조

17) 흥한술, "그 가족 제도는 사용기한이 지났습니다", 기획회의 608